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, 수정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필요

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공시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

또한 정보보호 공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업무의 위탁(안 제27조제2항)

- 1)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요청 등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위탁하고자 함

나.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(안 별표2)

- 1)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9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요청 등 관련
업무 지원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27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 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의2.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</u> <u>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요</u> <u>청 등 관련 업무 지원</u>
5. ~ 18. (생 략)	5. ~ 18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(公衆)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	법 제41조제1항제1호	300	600	1,000

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				
나.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1의2호	300	600	1,000
다.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2호	300	600	1,000
라.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3호	300	600	1,000
마. 법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4호	300	600	1,0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53